

시 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785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진학성	박영서	한유석	03/24 정만근
협 조			

『홍제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예정) 보고』

2014. 03.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홍제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예정) 보고

홍제천 등 4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절차(고시) 이행을 위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수립근거

- 관련 법 :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수립주체 : 서울특별시
 - ※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하천법 제25조 제1항)

■ 용역개요

- 용역명 : 홍제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 대상하천 : 지방하천(홍제천 등 4개 하천)
- 시행청 : 서울특별시
- 용역사 : (주)삼안, (주)도화엔지니어링
- 용역기간 : 2012. 4. 26 ~ 2014. 2. 28

■ 추진현황

- 2012. 4. : 과업 착수
- 2012. 5. : 착수 보고
- 2013. 2. : 자문회의 (홍수량 산정)
- 2013. 7.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공람기간 : 2013. 7. 17 ~ 8. 13
 - 주민의견 : 홍제천 신영동 저류시설 인근의 교량신설 또는 기존 교량(세검2교) 확장
- 2014. 2. : 서울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기수립 하천기본계획과 금회 기본계획 내용 비교표 보완
- 2014. 2. : 용역 준공

■ 하천위원회 자문 및 심의 결과 반영

● 자문일시 : 2013. 2. 26.

● 자문내용 및 조치결과

1. 계획빈도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상 기후에 의한 강우량의 증가와 하천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홍수 방어능력의 상향조정이 필요하여 기존계획빈도인 50년을 80년으로 상향

2. 홍수량 및 홍수위 저감대책으로 하도정비 이외 유역분담계획인 저류조 설치계획 필요

⇒ 과업하천 유역내 계획중인 빗물저류조는 총 7개소이며, 각 개별 빗물저류조의 유역 면적 및 저류용량이 작고, 대부분 유역 최상류 지역에 소규모로 산재되어 빗물 저류조 설치지점에서의 홍수저감 효과는 가능하나, 금회 계획빈도(80년) 홍수량 조건하에서는 홍수저감 효과가 미미함. 따라서 저류용량이 다소 크며 유역 중상류 지역에 위치한 신영동 저류조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 후 계획홍수량에 반영

3. 과거 피해원인 조사가 더 필요

⇒ 과업하천 유역의 홍수피해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발생에 따른 홍수방어 대안을 검토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홍수방어대안을 수립

● 심의일시 : 2014. 1. 22. ('14. 2. 13 : 분과위원회)

●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

1. 기수립 하천기본계획과 금회 기본계획의 내용 비교표 추가보완

⇒ 기수립 하천기본계획('00년, '05년)과 금회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홍수량 및 홍수위, 시설물계획, 하천구역 등) 비교표를 추가 보완

2. 생태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적 정화방법 및 공법들을 소개하여 보고서에 추가반영 필요

⇒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기법 및 정화사례 등을 추가 보완하여 반영

■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 내용<세부사항 고시문 참조>

1. 하천기본계획 수립

가.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목적

- 홍제천 등 4개 하천에 대하여 그간의 유역의 개발, 도시화, 기상특성변화 및 하천개수사업 등으로 인한 유역의 수리수문특성과 하도특성의 변화를 하천기본

- 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연평균 강우량과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마.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 설계빈도 조정

- 지방하천 : 도심지 하천임을 고려 기존 50년빈도 → 80년 빈도로 상향조정

2. 하천의 구분 및 지정(변경)

- 홍제천 등 4개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 홍제천 등 4개 지방하천의 구역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결정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가. 홍수관리구역 현황

- 하천법 제12조제1항(홍수관리구역)에 의거 과업구간 내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홍수관리구역으로 결정
- 홍수관리구역 현황

하천명	하천등급	연장(km)	개소 수	필지 수	면적(m ²)	발생 사유
홍제천	지방하천	0.043	2	2	464	계획홍수위 아래 토지
불광천	"	0.144	3	10	2,334	"
계		0.187	5	12	2,798	2개 하천

5. 하천 폐천부지 등

가. 하천 폐천부지 및 관리계획 현황

- 하천법 제84조제1항(폐천부지등의 관리)에 의거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용도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하천구역 인접 국·공유지인 “천, 제”부지에 대해 폐천부지로 결정
- 폐천부지 국·공유지 중 대부분은 치수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보전하였고, 하천구역과 이격되어 있어 하천으로서의 활용이 미흡하거나 기타 용도(주거지 및 산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폐천부지 현황 : 고시문 참조)

● 주요 시설물 계획

하천	개거구간			복개구간		비고
	축제(개소/m)	보축(개소/m)	교량 재가설	하천복원(개소/m)	단면확장(개소/m)	
홍제천	1개소/150m	2개소/165m	5개소	1개소/205m	-	
불광천	-	-	-	-	2개소/510m	
녹번천	-	-	-	-	1개소/700m	(지류)
봉원천	-	-	-	-	-	
계	1개소/150m	2개소/165m	5개소	1개소/205m	14개소/5,200	

■ 고시 일정

-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 게재일자 : 2014. 3. 27.
- 대상하천 : 지방하천 4개 하천

구분	하천	등급	하천연장				고시기관
			계	재수립구간		미수립구간(km)	
				최근 고시일	연장(km)		
1	홍제천	지방	11.13	2003. 12. 05	11.13	-	서울특별시
2	불광천	"	7.32	2003. 12. 05	7.32	-	"
3	녹번천	"	4.42	2006. 07. 06	4.42	-	"
4	봉원천	"	1.30	2006. 07. 06	1.30	-	"

● 고시사항 법적근거

고시내용	법적근거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변경)	-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	-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로붙임 : 1) 위치도 1부.

- 2) 하천기본계획 고시문(안) 1부.
- 3) 하천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과 1부(별도 첨부)
- 4) 토지세목조서 및 지형도면 1부(별도 첨부). 끝.

【위 치 도】

